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자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30일

나. 발 의 자: 양송이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양송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자율소방대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(2016.11.30.) 및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(2017.1.15.)를 계기로 전통시장 소화기 관리 실태 확인 및 화재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「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위한 계획」을 수립함. 또한 2024년 소방청에서는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화를 위해 「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」을 마련하였음. 본 조례안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구(區)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·구성·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힘쓰고자 제정됨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는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안 제5조는 자율소방대 활동을 평가하여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 규정을 담아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검토 결과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화재 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예방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의의를 찾을 수 있음.
-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함.
- 자율소방대는 시장 상인으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써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본 조례 제정으로 이를 지원하고

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운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화재 발생 시, 전통시장의 구조와 환경에 익숙한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통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양송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8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5. .

발 의 자: 양송이·신흥식·최봉희
김지연·유승용·정선희
의원 (6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자율소방대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.
2. “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4. “자율소방대”란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등”이라 한다)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·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율소방대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, 안전점검 및 홍보
2.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
3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·물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,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자율소방대 평가)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